

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1257 |
|----------|------|

발의년월일 : 2016. 7. 1 .

발 의 자 : 김경환 의원 외 5명

1. 개정사유

- 의회운영위원회 정수를 일반 상임위원회 정수와 같이 5명으로 조정하여 상임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며,
-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띄어쓰기 및 일부조문의 용어를 정비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 변경 (안제2조)

- 의회운영위원회 6명 ⇒ 5명으로 조정
- 다른 상임위원회 정수와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함.

나.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띄어쓰기 및 일부조문 용어 정비
(제명, 안제2조~안제6조, 안제8조, 안제11조, 안제11조의2조, 안제13조)

3. 근거법규

가. 지방자치법 제56조, 제62조

나.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

4.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: 따로 붙임

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중 “울산광역시중구의회”를 “울산광역시 중구의회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울산광역시중구의회”를 “울산광역시 중구의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중 “6명”을 “5명”으로 한다.

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 중 “건설도시국소관에”를 “건설도시국 소관에”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같은호 나목 중 “복지경제국소관에”를 “복지경제국 소관에”로 한다.

제4조 중 “(상임위원회위원)”을 (상임위원회 위원)으로하고, “상임위원회위원”을 “상임위원회 위원”으로 한다.

제5조 제1항 중 “총선거후”를 “총선거 후”로, “폐회기간중에”를 “폐회 기간에”로, “다음회기”를 “다음 회기”로, “전일까지”를 “전날까지”로 한다.

제6조 제2항 중 “상임위원장에서”를 “상임위원회에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선임될 때 까지는 위원중에”를 “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에”로 하며, “2명 이상인 경우는 그 중”을 “2명 이상이면 그중”으로, “이경우”는 “이 경우”로, “사유없이”는 “사유 없이”로, “않을 때에는”은 “않을 때는”으로 하고, 같은조 제5항 중 “폐회중에는”을 “폐회 중에는”으로 한다.

제8조 제2항 중 “위원중”은 “위원 중”으로 하고 “2명 이상인 경우는 그 중”을 “2명 이상이면 그중”으로, “사유없이”는 “사유 없이”로, “않을 때에는”은 “않을 때는”으로 한다.

제11조 제3항 중 “있을 때에는”은 “있을 때는”으로 한다.

제11조의2 제1항 중 “이유없이”는 “이유 없이”로 하며 “않을 때에는”은 “않을 때는”으로 하고, 같은조 제2항 중 “소속상임위원”을 “소속 상임위원”으로 한다.

제13조 중 “「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 규칙」”을 “「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」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구조문 대비표

| 현행 | 개정안 |
|---|--|
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</u></p> <p>제2조(상임위원회의 설치) <u>울산광역시중구의회</u> (이하 "의회"라 한다)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<u>원정수</u>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의회운영위원회 6명 2. 행정자치위원회 5명 3. 복지건설위원회 5명 <p>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① (생략)</p> <p>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의회운영위원회 가.~다. (생략) 2. 행정자치위원회 가.~바. (생략) 3. 복지건설위원회 가. <u>건설도시국소관에</u> 속하는 사항 나. <u>복지경제국소관에</u> 속하는 사항 <p>제4조(상임위원회위원)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위원(이하 "상임위원"이라 한다)이 된다. 다만,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5조(상임위원의 임기)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. 다만, <u>총선거후</u>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<u>폐회기간중에</u> 만료된 때에는 <u>다음회기에서</u> 위원을 새로 선임한 <u>전일까지</u> 재임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</u></p> <p>제2조(상임위원회의 설치) <u>울산광역시 중구의회</u> (이하 "의회"라 한다)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<u>원정수</u>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의회운영위원회 5명 2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 <p>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의회운영위원회 가.~다. (현행과 같음) 2. 행정자치위원회 가.~바. (현행과 같음) 3. 복지건설위원회 가. <u>건설도시국 소관에</u> 속하는 사항 나. <u>복지경제국 소관에</u> 속하는 사항 <p>제4조(상임위원회 위원)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(이하 "상임위원"이라 한다)이 된다. 다만,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상임위원의 임기)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. 다만, <u>총선거 후</u>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<u>폐회 기간에</u> 만료된 때에는 <u>다음 회기에서</u> 위원을 새로 선임한 <u>전날까지</u> 재임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|

| 현행 | 개정안 |
|--|--|
| <p>제6조(상임위원장) ① (생략) ② 상임위원장은 해당 <u>상임위원장에서</u> 1명을 추천하고, 본회의에서 의결한다. ③ 위원장이 선임될 때 <u>까지는 위원중에</u> 최다선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, 최다선 의원이 <u>2명 이상인 경우는 그 중 연장자가</u>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u>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</u> <u>정당한 사유없이</u> 직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④ (생략). ⑤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 다만, <u>폐회중에는</u>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.</p> <p>제8조(특별위원회의 위원장) ① (생략).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<u>위원</u> 중 최다선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, 최다선 의원이 <u>2명 이상인 경우는 그 중 연장자가</u> 그 직무를 대행한다.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<u>정당한 사유없이</u> 직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③ (생략)</p> <p>제11조(부위원장) ①~② (생략)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<u>부위원장이</u>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.</p> | <p>제6조(상임위원장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상임위원장은 해당 <u>상임위원회에서</u> 1명을 추천하고,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<u>위원 중에</u> 최다선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, 최다선 의원이 <u>2명 이상이면 그중 연장자가</u>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u>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</u> <u>정당한 사유 없이</u> 직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④ (생략). ⑤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 다만, <u>폐회 중에는</u>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.</p> <p>제8조(특별위원회의 위원장) ① (현행과 같음).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<u>위원</u> 중 최다선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, 최다선 의원이 <u>2명 이상이면 그중 연장자가</u> 그 직무를 대행한다.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<u>정당한 사유 없이</u> 직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1조(부위원장) ①~② (현행과 같음)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<u>부위원장이</u>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.</p> |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|
| <p>제11조의2(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) ① 상임위원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<u>이유없이</u> 직무를 수행하지 <u>않을 때에는</u>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의 불신임 의결은 <u>소속상임위원 과반수</u>의 발의로 본회의에서 의결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제13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·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<u>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 규칙</u>」 준용한다</p> | <p>제11조의2(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) ① 상임위원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<u>이유 없이</u> 직무를 수행하지 <u>않을 때는</u>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의 불신임 의결은 <u>소속 상임위원 과반수</u>의 발의로 본회의에서 의결한다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3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·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<u>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</u>」 준용한다</p> |

[관계법령]

지방자치법

[시행 2015.6.4.] [법률 제12738호, 2014.6.3., 타법개정]

제56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 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·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제62조(위원회에 관한 조례)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

[시행 2015.12.31.] [울산광역시중구조례 제779호, 2015.12.31., 일부개정]

울산광역시 중구(의회사무국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6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0.5.10.><개정 2012.6.29.>

제2조(상임위원회의 설치) 울산광역시중구의회 (이하 "의회"라 한다)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2.6.29.>

1. 의회운영위원회 6명 <개정 98·6·30>
2. 행정자치위원회 5명 <개정 97·8·4> <개정 98·6·30> <개정 2006.6.26.><개정 2012.6.29.>
3. 복지건설위원회 5명 <개정 97·8·4> <개정 98·6·30> <개정 2006.6.26.><개정 2012.6.29.>

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.

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.

1. 의회운영위원회

가.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

나.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
다. 의회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

2. 행정자치위원회 <개정 97·8·4><2012. 6. 29>

가. 행정지원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<개정 97·8·4> <개정 2012.6.29.>

나. 기획예산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<개정 98·11·18> <개정 2012.6.29.>

다.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

라. 문화관광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<신설 2012.6.29.><개정 2015.12.31.>

마. 도시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<신설 2013. 8. 6>

바. 문화의전당 소관에 속하는 사항 <신설 2014.7.28.>

3. 복지건설위원회 <개정 97·8·4> <개정 2012.6.29.>

가. 건설도시국소관에 속하는 사항

나. 복지경제국소관에 속하는 사항 <본목신설 97·8·4> <개정 2003·2·28><개정 2006.12.26.>
<개정 2010.5.10.>> <개정 2012.6.29.>

제4조(상임위원회위원)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위원(이하 "상임위원"이라 한다)이 된

다. 다만,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.

②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

제5조(상임위원의 임기)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. 다만, 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.

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 <개정 2010.5.10.>

제6조(상임위원장)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(이하 "상임위원장"이라 한다) 1명을 둔다.<개정 2013. 8. 6>

②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장에서 1명을 추천하고, 본회의에서 의결한다.<전문개정 2004.10.29.> <개정 2013. 8. 6>

③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에 최다선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,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신설2004.10.29.><개정2011.11.7.>

④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.<전문개정 2004.10.29.>

⑤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 다만,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.<전문개정2004.10.29.>

제7조(특별위원회)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07·03·12>

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.

제8조(특별위원회의 위원장)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.<개정 2013. 8. 6>

②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최다선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,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11.11.7.>

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

제9조(위원의 선임)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.〈전문개정2004.10.29.〉

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. 〈전문개정2004.10.29.〉

제10조(위원장의 직무)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.

제11조(부위원장)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.〈 개정 2004. 1. 5〉〈개정 2013. 8. 6〉

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.〈 개정 2004. 1. 5〉

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.〈 개정 2004. 1. 5〉

제11조의2(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) ① 상임위원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에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. 〈신설 2004. 10.29〉〈개정 2013. 8. 6〉

② 제1항의 불신임 의결은 소속상임위원 과반수의 발의로 본회의에서 의결한다.〈신설 2004. 10.29〉 〈개정 2013. 8. 6〉

③ 제2항의 불신임 의결이 있는 때에는 상임위원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.〈신설 2004. 10.29〉

제12조(소위원회)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.

③ 소위원회 위원은 해당 위원회에서 호선하며, 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호선한다.

제13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·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

「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 규칙」을 준용한다. 〈개정 2010.5.10.〉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지방자치법

제66조(의안의 발의)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.

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위원을 구분하되,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. 다만,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1.7.14.>

⑤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. <신설 2011.7.14.>

제66조의2(조례안예고) ①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, 주요 내용,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.

② 조례안예고의 방법,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1.7.14.]

제71조(회의규칙)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

울산시

□ 제7조의2(예산결산특별위원회) ① 예산안·결산·기금운영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9인 이내로 한다.

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1년간 재임하고, 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제5조제1항의 단서 및 제2항, 제6조제3항, 제4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준용하고, 제7조제3항, 제4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. [본조신설 2013.11.12]

경북도

제7조의2(예산결산특별위원회) <신설'12.12.27> ① 예산안·결산·기금운영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.<신설'12.12.27>

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다음연도 6월말까지 재임하고, 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(다만,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)<신설'12.12.27>

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(의안번호 1257)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 일자 : 2016. 7. 5.(화)
- 나. 제출 자 : 김경환 의원 외 5명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6. 7. 8.(금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6. 7. 12.(화)

2. 제안이유(제안설명자 : 김경환 운영위원장)

- 의회운영위원회 정수를 일반 상임위원회 정수와 같이 5명으로 조정하여 상임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며,
-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띄어쓰기 및 일부조문 용어를 정비 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 변경 (안제2조)
 - 의회운영위원회 6명 ⇒ 5명으로 조정
 - 다른 상임위원회 정수와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함
-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띄어쓰기 및 일부조문 용어 정비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(검토보고자 : 전문위원 정미옥)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제62조에 근거하여 제정한 조례로서,
이번 개정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중
의회운영위원회 정수를 현 6명에서 5명으로 변경하여 다른
상임위원회 위원정수와 같이하고,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
따른 띄어쓰기 및 일부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
개정조례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